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7. 1.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효율적인 폐기물행정 추진을 위해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의 청결유지 의무를 규정하고, 위원회 및 단체에 견학실시 등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방법의 개선(안 제2조 및 제5조)
-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의 청결유지 의무 신설(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판매자가 봉투대금을 체납하는 경우 체납금 징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조제6항)
- 위원회의 명칭 및 구성 등 조정(안 제17조)
- 폐기물관리위원회 및 재활용품 수집단체 등에 대한 선진시설견학 근거 마련(안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제2항)

3. 참고사항

- 「폐기물관리법」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처리시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표준조례 (안) : 2006. 6. 환경부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 환경부. 2003. 7

구미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를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호중 “대행폐기물”을 “대형폐기물”로 하고, “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생활폐기물 중”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삭제하고, 동조제5호 및 제6호중 “같은법시행령”을 각각 “영”으로 하며, 동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제목 및 동조제3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청소업무의 효율성 검토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중 “장소”를 “시간, 장소”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중 “대행폐기물”을 각각 “대형폐기물”로 하며, 동조제3항중 “대형폐기물”을 “대형폐기물”로 한다.

제5조제6항중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을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으로 하여 동항을 제10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 내지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 다만,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 ⑦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 등은 【별표1】의 일시적다량폐기물의 수수료기준에 준한다.
-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추가하여 변경허가(신고)를 하여야 하며,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7】과 같다.
- ⑨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업자는 【별지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중 제3호 및 동조의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목 및 제1항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단서규정을 삭제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청결유지 조치명령) ①시장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중 “생물해성수지”를 “생분해성수지”로 한다.

제9조제4항중 “연료의 접합성”을 “원료의 적합성”으로 하고, “준수여부를”을 “준수여부를 확인 후”로 하며, 동조제6항중 “시장과”를 삭제한다.

제1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봉투대금을 고의로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의 “대형 폐기물”을 “대형 폐기물”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조변의”를 “주변의”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제1호외의 자로서”를 “기타”로 하여 제4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3.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

제14조제1항중 “일반봉투”를 “일반용 봉투”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쓰레기 처리”를 “폐기물 행정”으로, “쓰레기처리시민 위원회”를 “폐기물관리위원회”로, 동조제2항중 “20인”을 “15인”으로 하고, “시의원”을 “공무원, 시의원”으로 하며, “쓰레기처리”를 “폐기물 관리”로 한다.

제17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촉한 위원에게는 현장 및 선진 전문시설의 확인을 위한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에 현장 및 선진전문시설 확인을 위한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조중 “폐기물관리법”을 “「폐기물관리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동조동항제2호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자연공원법”을 “「자연공원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처 훈령 제 270호)”을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규정」(환경부훈

령 제270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제16조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별표2, 별표3 및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5조제7항은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의 완공후 최초의 반입분부터 적용한다.

【별표2】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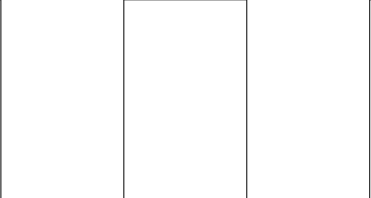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배출일(시간)
1. 종 이 류	- 신문지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종이컵, 팩 - 상자류 (과자포장상자, 기타 골판지 상자 등)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비닐코팅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비닐코팅 부분제거 -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철판을 제거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2.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 기타 캔 (부탄가스, 살충제용기)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후 배출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3. 병 류	- 음료수병, 기타 병 - 농약병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은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팔수 있음 - 물로 행군 후 음료수병 등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 배출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4. 고 철 류	- 고철 (공기구, 철사, 못, 철판등, 쇠붙이) - 비철금속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샷시류)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위와 같음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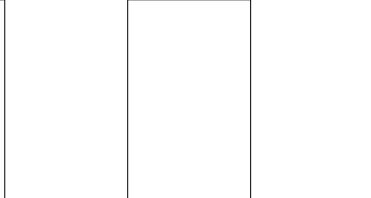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배출일(시간)
5. 플라스틱류	- PET병 - 합성수지 용기류(일반 가정용, 생활용품류) - 스티로폼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이물질 및 부착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투명비닐 속에 넣거나 묶어서 배출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 - 과일, 생선상자 등을 잔재물을 완전히 비우고 물로 깨끗이 행구어 배출 - 가전제품포장용합성수지재질완충재 감량화 지침(환경부고시 제95-90호)에 의하여 제조자들에게 감량화 또는 회수, 재활용의무가 부여된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전자렌지, 퍼스날 컴퓨터 제품의 스티로폼 완충재는 판매업자에게 배출 - 도시락 및 수산양식용 폐부자와 이물질이 묻어 있거나 타재질(PE,PP)로 코팅된 페스티로폼은 제외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6. 폐형광등 및 필름류	- 폐형광등 - 필름류 포장재	- 배출시 깨어지지 않도록 보관하여 외피(포장재)를 벗겨서 배출 - 배출시에는 해당 읍면동의 폐형광등 전용 회수함에 배출 - 깨어진 형광등은 분류하여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배출 - 음식료품류, 화장품류, 세제류, 농축산품류등 필름류포장재는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필름류 포장재만 담아서 배출 - 1회용비닐봉투는 별도 분리배출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부터 자정(24:00) 까지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배출일(시간)
7. 대 형 폐 기 물	가구류, 주방용품, 가전제품	-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기 준에 의한 스티커 부착 후 배출	배출일 : 읍면·동별 수거 계획에 따름 배출시간 : 저녁 7시 부터 자정(24:00) 까지
8. 음 식 물 쓰 레 기	가축이 먹을 수 있는 것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 비닐, 병뚜껑, 젓가락 등 이물질 을 제거한 후 음식물 전용 봉투 또는 전용 수거 용기에 담아 배 출	배출일 : 토요일, 공 휴일 전날을 제외한 매일 배출시간 : 저녁 7시 부터 자정(24:00) 까지
9. 일 반 생 활 쓰 레 기		-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이 혼합 되지 않게 하여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넣어 집앞에 배 출(문전 수거 원칙)	배출일 : 토요일, 공 휴일 전날을 제외한 매일 배출시간 : 저녁 7시 부터 자정(24:00) 까지

【별표3】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제9조 제5항)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 미 시 문 장
쓰레기봉투(5(3)~100ℓ)
—— 일 반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만 수거합니다. 3. 이 봉투외에 다른 봉투 등을 사용하여 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합니다.
구 미 시 장
연락처 : 구미시청 생활위생과 (전화 : 450-6191)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구 미 시 문 장
쓰레기봉투(5(3)~100ℓ)
—— 공 공 용 ——
1.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하여 주십시오. 2. 이 봉투는 가로 및 골목길의 쓰레기를 담는데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 미 시 장
연락처 : 구미시청 생활위생과 (전화 : 450-6191)
제작업체고유번호또는품질인증표시

【별 표6】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제11조1항2호)



NO. 10-000000	판매소보관용(10,000원) NO. 10-000000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성명 :
금 일만원(₩10,000)	전화 :
구 미 시 장	주소 :



NO. 05-000000	판매소보관용(5,000원) NO. 05-000000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성명 :
금 오천원(₩5,000)	전화 :
구 미 시 장	주소 :



NO. 03-000000	판매소보관용(3,000원) NO. 03-000000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성명 :
금 삼천원(₩3,000)	전화 :
구 미 시 장	주소 :



NO. 02-000000	판매소보관용(2,000원) NO. 02-000000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성명 :
금 이천원(₩2,000)	전화 :
구 미 시 장	주소 :



NO. 01-000000	판매소보관용(1,000원) NO. 01-000000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성명 :
금 일천원(₩1,000)	전화 :
구 미 시 장	주소 :

1. 규 격 : 내부지름 : 6.5CM

: 외부지름 : 8CM

2. 재 질 : 특강지

3. 글 씨 : 검정색

4. 바탕색 : 1,000원 : 노란색

2,000원 : 주황색

3,000원 : 연녹색

5,000원 : 청 색

10,000원 : 연자주

5. 둘레원 바탕색 : 1,000원 : 청 색

2,000원 : 노란색

3,000원 : 녹 색

5,000원 : 청 색

10,000원 : 자 주

6. 둘레원 글씨체 : 흰색

【별표7】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제5조 제8항)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 1)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 2)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

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됨

- 2)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 3)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4)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5)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6)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 가. 처리업소는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나. 처리업소는 매월 시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illegible]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구미시폐기물관리조례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법령 제명 띄어쓰기
제2조(용어의 정의)(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현행과 같음)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 생활폐기물 중 ----- ----- ----- ----- -----	철자교정 및 용어조정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 ----- 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 ----- ----- ----- -----	용어정의 조정(불필요한 문구삭제)
5. “지정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4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 ----- 영 ----- ----- -----	용어변경
6. “감염성폐기물”이라 함은 법제2조제4의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 설>	6. ----- ----- 영 ----- ----- -----	용어변경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개정 (용어정의)

신 · 구조문 대비표

[illegible]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③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 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별표1】에 수수료를 기준액만큼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를 구입하여 이를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대형폐기물 ----- ----- ----- -----대형폐기물 ----- ----- ----- ----- ----- ----- -----. ④----- ----- ----- -----시간, 장소----- -----. ⑥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다만,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③철자교정 ④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개정 - 사업장(건설)폐기물에서 분리
<신 설>	⑦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처리시설에 처리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 등은 【별표1】의 일시적 다량폐기물의 수수료기준에 준한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개정
<신 설>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기 위해서는 시장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추가하여 변경허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개정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u><신설></u> ⑥시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별표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조치) ①(생략) 1. (생략) 2. (생략) 3.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량을 말한다)이하 배출하는 사업장 ②(생략) ③제1항 제3호에 의거 시설이 설치 운영하는 처리 시설에 위탁처리하고자 할 경우 처리비는 【별표1】의 일시적 다량 배출물 수수료를 적용한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7】과 같다. ⑨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업자는 【별지제3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⑩ ----- ----- ----- ----- ----- ----- ----- -----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 제6조(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조치)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삭제) ②(현행과 같음) ③(삭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개정 생활쓰레기 적정배출을 위해 생활쓰레기 배출요령을 추가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개정 - 공사장 생활 폐기물 로 용어 조정(안제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개정 - 공사장 생활 폐기물 로 용어 조정(안제5조)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7조(일반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고 또는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일반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 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 ----- ----- ----- -----생활폐기물----- ----- -----. ②----- ----- ----- ----- -----, (단서 삭제)	용어조정에 따른 조명 변경 용어조정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조례 제5조4항에 의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의무를 배제하는 문구를 삭제하기 위함
<신설>	제7조의 2(청결유지 조치명령) ①시장은 법 제7조의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의 2(청결유지 조치명령)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의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함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u><신 설></u>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제6조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함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생략) ②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	제8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재질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용어조정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이유
분)를 30%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u>생분해성수지</u>는 생분괴성봉투 단체표준 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 투명하게 제작하며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반투명 흰색을 기준으로 하되 10ℓ, 20ℓ는 옅은 녹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옅은 청색으로 한다. ③-④(생략)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③(생략)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u>연료의</u>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규격,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생략) ⑥시장은 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u>시장</u>과 <u>광고주</u>와 별도계약에 의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⑤(생략) ⑥ <신설>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생략) 1. (생략)	----- -----<u>생분해성수지</u> ----- ----- ----- ----- ----- ----- ----- ----- -----. ③-④(현행과 같음)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 ----- -----<u>원료의</u> <u>적합성</u>,----- ----- <u>준수여부를 확인 후</u> ----- --. ⑤(현행과 같음) ⑥----- ----- ----- ----- --<u>광고주</u>와----- ---. 제10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⑤(생략) ⑥봉투대금을 <u>고의로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u> 제1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용어조정 및 맞춤법 교정 맞춤법에 맞게 교정 규제관련내용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해 폐기물관리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폐기물관리조례에 삽입.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쓰레기 봉투판매에 준하여 판매소에서 판매된 【별표 6】의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스티커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②(생략)	2. ----- ----- ----- ----- -----대형폐기물----- ----- -----. ②(현행과 같음)	철자교정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u>조변의</u>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 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생략)	제12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 -----<u>주변의</u>----- -----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철자교정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생략) 1. - 2. (생략) <신 설> 3. 제1호외의 <u>자로서</u> 시장이 정하는 자 ②(생략)	제13조(수수료의 감면) ①(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u>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u> 4. <u>기타</u> ----- ----- ②(현행과 같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함. 문구조정
제14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시장은 쓰레기배출자가 <u>일반봉투</u>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4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u>일반용 봉투</u>----- ----- -----. ②(현행과 같음)	용어조정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7조(위원회 구성) ①시장은 원활한 쓰레기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한 민간협의를 유도하기 위하여 <u>쓰레기처리시민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시의원, 학계, 환경단체, 여성단체, <u>쓰레기처리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등으로 시장이 위촉한다.</u> ③-④(생략) <u><신 설></u>	제17조(위원회 구성) ①----- <u>폐기물 행정</u> ----- ----- ----- <u>폐기물관리위원회</u> ----- ----- --. ②-----15인 내로 구성하며, 공무원, <u>시의원,</u> ----- <u>폐기물관리</u> ----- ----- -----. ③-④(<u>현행과 같음</u>) ⑤위촉한 위원에게는 현장 및 선진 전문시설의 확인을 위한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용어변경 위원의 수를 적정인원으로 조정하고, 의사결정과정에 공무원의 의견도 반영코자 함. 정보수집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진전문시설 견학 근거 마련
제18조(재활용품 수집 장려) <u>시장은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u> <u><신 설></u>	제18조(재활용품 수집 장려) ① <u>시장은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u> ② <u>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에 현장 및 선진 전문시설 확인을 위한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u>	 선진시설 견학을 실시하여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함

참 고 자 료

□ 폐기물관리법(제6조, 제7조, 제12조, 제15조)

제6조 (국민의 책무) ①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누구든지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제8조관련)

1. 삭제 <2002.8.7>

2.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 (1) 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03. 7)

라. 쓰레기 배출시간 지정·운영

- 쓰레기 수거여건에 따라 지역별로 쓰레기 배출시간을 지정하되, 가능한 한 일몰후~일출전(20:00~익일 06:00)에 배출하도록 규정
- 조례로서 쓰레기 배출시간 준수를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는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에 따라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